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90 발의연월일: 2020. 11. 24.

발 의 자: 강준현 · 김수흥 · 박상혁

변재일 · 양향자 · 이해식

임호선 • 전용기 • 최혜영

홍기원 · 홍성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「국토기본법」에서는 시·군종합계획을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으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·군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음.

하지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·군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과 달리, 「국토기본법」은 시·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등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.

이에, 「국토기본법」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「국토기본법」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"시·군종합계획"을 수립할 수 있도록 "시·군종합계획"의 정의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(안 제6조제2항, 제9조제2항).
- 나.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종전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"특별시·광역시·시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 치시·시"로 한다.

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 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아직 차기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계획을 따른다.

제9조제2항 전단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)	제6조(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	2
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, 도종	
합계획, 시・군 종합계획, 지역	
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	
다.	.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시·군종합계획: <u>특별시·광</u>	3 <u>특별시·광역</u>
<u>역시·시</u> 또는 군(광역시의	<u>시·특별자치시·시</u>
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구역을	
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	
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	
전 방향을 제시하고, 토지이	
용, 교통, 환경, 안전, 산업, 정	
보통신, 보건, 후생, 문화 등에	
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	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	
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되는	
도시・군계획	
4.・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국토계획의 상호 관계) ①	제7조(국토계획의 상호 관계) ①
• 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	3

로 하여 수립하며, 도종합계획, 시·군종합계획,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 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 다. <단서 신설>

제9조(국토종합계획의 수립) ① x (생 략)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 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<u>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</u>
종료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아
직 차기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
경우에는 종전의 계획을 따른
<u>다.</u>
제9조(국토종합계획의 수립) ①
(현행과 같음)
②
특별시장·광
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
·
③・④ (현행과 같음)